

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5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1. 08.

이쌍자 의원 등 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6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쌍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줄임으로써,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의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4)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1호
 - 예고기간: 2024. 11. 8. ~ 2024. 11. 13.(5일간)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,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 ~ 제4조) 군수,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5조 ~ 제8조)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, 재정 지원, 협력체계 구축,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